

최근 영국의 LM 착신접속료 규제 동향과 시사점

Regulatory Trends on the LM Termination Charges in UK and Their Implications

김방룡(P.R. Kim)

공정경쟁연구팀 책임연구원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내는 「LM 통화요금」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사업자간의 의견 대립이 증가하면서, 이 요금의 인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규제 기관인 OFTEL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LM 착신 접속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현행 LM 요금제도의 현황과 OFTEL이 제안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 및 이 안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나라 LM 요금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 머리말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할 때 내는 요금, 소위 「LM(Land-Mobile) 통화요금」 인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LM 접속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금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유무선 사업자간은 물론이고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의견 대립이 증가하고 있다.

LM 통화요금은 고정전화회사 유보금액 및 착신 접속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¹⁾[1].

LM 착신 접속요금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LM 통화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비용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LM 착신서비스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 착

신자가 가입한 이동망에 접속해야만 통화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필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외국에서는 착신사업자의 과도한 접속요금 요구로 이용자 요금이 인상되고 통신서비스 사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가에 기초하여 접속요금을 산정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부 고시에 회계적 원가에 의해 이동망 접속요금을 산출하여 상호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이동전화에서 고정전화로 통화한 경우에 비해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한 경우의 요금이 훨씬 높아서 소비자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통신 규제 기관인 OFTEL은 LM 착신 요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1년 9월에 이동전화 각사에 대해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규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관계 각사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면허개정 신청을 거부하는 사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OFTEL은 2001년 12월 중순에 LM 통화요금

1) 예를 들어 KT 가입자가 SKT 가입자에게 1분간 통화할 경우, 평상시와 할증 및 심야 요금을 감안하여 약 119원의 통화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중 약 60%에 해당되는 63.6원은 이동망 사용에 대한 접속요금으로 KT가 SKT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약 40%는 KT 자체의 유보액이 된다.

에 관한 문제를 분쟁처리 기관인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CC)의 심사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2002년 6월 내지 2002년 12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II. 영국의 현행 LM 요금 규제

1. 현행 제도가 채택되기까지의 경위

영국의 현행 통신요금 규제제도는 대부분 1984년 통신법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접속요금에 대해서는 1997년부터 Interconnection Directive가 EC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영국의 접속요금 규제는 1998년 12월에 개정된 것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1996년 1월, OFTEL 청장인 DGT가 BT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던 중, 이동망 전화요금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의 초점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고정전화 회사인 BT와 CWC에서 발신되어 이동전화 회사인 Vodafone 및 BT Cellnet(현재의 mm02) 망에 착신되는 LM 통화 요금이었다. 이 조사 과정에서 Vodafone과 BT Cellnet이 CWC 이외의 사업자, 즉 BT, Orange, One2One에게는 과도하게 높은 LM 착신 접속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DGT는 이와 관련하여 1997년 12월에 LM 착신 접속요금 인하 명령을 내렸으나, Vodafone과 BT Cellnet은 오히려 1998년 1월에 CWC와 요금 인상에 합의함으로써 이 명령을 무시하였다. 즉 CWC에 부과하는 착신요금을 BT에 부과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의 LM 통화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BT가 75%, CWC가 10%, CATV 사업자들이 8.3%, Indirect Access Operator들이 6.7%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DGT는 당시 면허체계 하에서는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1998년 3월에 MMC(Monopoly & Merger Committee; 독점 및 합병위원회)에 Vodafone 및 BT Cellnet의 LM 착신 접속료의 공공

이익 침해 여부를 조사 의뢰하고 중재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MMC는 DGT, 이동망사업자,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LM 착신접속료에 대한 규제사항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Reports on reference under section 13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1984 on the charges made by Cellnet and Vodafone for terminating calls from fixed-line networks」 라는 보고서에서 발표하였다²⁾ [2].

2. MMC 보고서의 주요 내용

가. 경쟁압력 여부 검토

MMC는 LM 착신 접속요금 수준이 공공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MMC는 1998년 12월,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의 요금이 공공이익에 위배된다고 OFTEL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당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가입 변경률이 31-29%(1997/98)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이동전화 착신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증거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MMC는 이러한 수치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실질적인 망 전환율은 7% 정도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가입자 수 점유율로 볼 때, BT Cellnet과 Vodafone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하락중이었으나, 여전히 두 사업자 점유율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³⁾

착신 접속요금에 대한 경쟁압력 여부를 검토한

2) MMC 보고서에 대한 분석보고서(김방룡, 장석윤, 변재호, 정충영, 장병환, 기술경제연구시리즈 99-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9.)는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우리나라 LM 착신 접속요금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당시의 이동전화사업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3월 현재, 900만 가입자 중 Vodafone 340만(38%), BT Cellnet 310만(34%), Orange 130만(15%), One2One 120만(13%)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BT Cellnet과 Vodafone은 아날로그망(TACS)과 디지털망(GSM 방식)을 동시에 운영중이었으며, 아날로그망은 2005년에 폐쇄할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Orange와 One2One은 Digital PCN 서비스(1800 GSM)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과 MMC가 내린 결론은 일부 거대 이용자만이 착신요금에 관심이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이용자의 무관심으로 경쟁압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LM 착신 접속요금 인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도 경쟁 압력에 기인하기보다는 규제기관의 관심 증대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였다.

나. 요금 설정 방식

MMC는 LM 착신 접속요금 수준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된다며 OFTEL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호 착신 서비스에는 경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애로부문의 요금결정에 가장 적절한 장기증분 비용(Long Run Incremental Cost: LRIC)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OFTEL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에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동망 원가기준 접속요금 설정방식으로서 LRIC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그들은 첫째, LRIC 방식은 고정망에 신규 진입할 때 신규 진입자에게 BT 망을 이용할 것인가 자체 설비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데 필요한 신호체계 역할(make-or-buy signal)을 하도록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이동망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둘째, 고정망은 대부분 하부구조비용이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고정망에서 LRIC는 비교적 영향이 미미하지만, 이동망은 착신서비스가 망의 주요 요소이며 전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회수되어야 할 투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LRIC 방식 적용시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셋째, 이동망에 적용할 LRIC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에 대하여 MMC도 EU의 상호접속지침에서 국가규제기관이 LRIC 모델개발 지연시 최선 관행 요금(best current practice charge)을 권고하는 등 LRIC 도입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EU 지침은 단지 권고 사항으로 꼭 따라야 될 이유는 없으므로 MMC는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MMC는 통신망에 실제로 투자된 자본 및 통신망 운영비를 조사해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배부

하는 완전배부원가(Fully Attributed Cost: FAC) 방식에 근거하여 착신 접속요금수준을 계산하여 BT Cellnet과 Vodafone의 요금이 공공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다. 착신 접속료 인하

착신 접속요금 인하와 관련한 주요 발표 내용은 Vodafone과 BT Cellnet의 LM 착신접속요금이 경쟁 압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는 시장 상황 하에서 과다하게 결정이 되고 있으므로, 시장 지배력이 강한 Vodafone 및 BT Cellnet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가격상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두 회사가 설정하는 착신 접속 요금에 대해서는 2000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RPI-9(%)」의 가격인하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표 1> 참조). 그러나 시장 지배력이 미약한 Orange와 One2One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3].

OFTEL은 현재 이동전화 각 사의 착신 접속요금(<표 2> 참조)이 그 제공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요금 수준을 규제함으로써 착신 접속요금의 인하, 더 나아가 최종 이용자 요금의 인하를 촉진시킬 생각이다.

<표 1> Vodafone/BT Cellnet에 대한 현행 요금규제

적용 기간	착신료 규제	상한치(가중 평균)
1999년 4월~2000년 3월	일률적으로 약 25% 인하	11.70펜스/분
2000년 4월~2001년 3월	「RPI-9(%)」의 가격상한 규제 적용	10.86펜스/분
2001년 4월~2002년 3월		10.20펜스/분

<표 2> 이동전화 각 사의 착신 요금 (2001년 9월 1일 현재) (단위: 펜스/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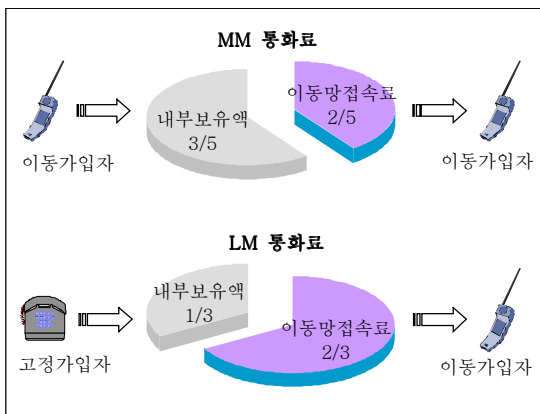
사업자	평일주간	평일야간	휴일
Vodafone	13.15	7.33	4.71
BT Cellnet	12.44	12.44 ^{주)}	1.13
Orange	14.52	10.51	4.30
One2One	15.62	10.78	2.51

주) 2001. 10. 1.부터 10.20펜스/분
<자료>: OFTEL

최종이용자 요금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BT의 내부 유보 금액에도 현재, 착신요금과 같은 요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BT에 적용된 다른 요금규제의 개선 안에서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다.

OFTEL이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한 경우에 드는 LM 착신요금(termination charge) 수준이다. OFTEL은 이 착신 접속요금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LM 통화요금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OFTEL에 따르면 고정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한 경우, 착신 접속요금은 최종 이용자 요금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동전화에서 타 회사의 이동전화로 통화한 경우, 최종 이용자 요금 가운데 차지하는 착신요금 비율은 대략 40% 정도이다. 이는 LM 착신요금 수준이 MM 착신요금 수준에 비하여 최종 이용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그림 1) 참조.



(그림 1) MM 및 LM 통화료에서 차지하는 내부보유액과 접속료 수준의 비교

라. Access 비용의 배분

DGT는 이동망 서비스를 접속(access), 발신호(outgoing calls), 착신호(incoming calls)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비용은 이 세 가지 서비스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access는 독자적 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MMC는 발신호와 착신호에만 비용을 배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각 이해 관계자의 견해는 <표 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표 3> Access 서비스 비용배분에 대한 의견

구분	견해	비용배분
DGT	Access 능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단말기 및 SIM 카드, 단말기보조금,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HLR에 고객정보입력 및 위치정보갱신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가입자 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access에 배분되어야 함	access에 배분
Vodafone/BT Cellnet	Access는 독자적 서비스로 볼 수 없으며, 이동망의 모든 비용은 통화량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임	발신 및 착신호에 배분
MMC	Access 서비스 성격의 비용이 존재하지만 비용배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별도 서비스로 인정 곤란	발신 및 착신호에 배분

마. 마케팅 비용 및 SP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비용

Vodafone이 마케팅비용 및 SP(Service Provider)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과 관련하여 외부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외부성이란 비용 또는 편익을 발생시키는 의사결정자가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는 효용으로, 가입자 증가로 통화 수발신 기회의 증가를 의미하는 선택 외부성(option externalities), 통화를 해 줄 발신자를 갖게 됨으로써 착신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는 호 외부성(call externalities), 가입자 증가로 인한 단위 당 비용 감소를 의미하는 규모 외부성(scale externalities)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Vodafone은 option externalities에 초점을 두고 LM 통화 발신자에게도 혜택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Vodafone에 따르면 외부성 가치는 연간 최저 7천 7백만 파운드에서 최대 529백만 파운드 사이로 추정되며 이를 접속요금에 반영시키면 4.3ppm에서 29.4ppm의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DGT는 외부성 산정이 곤란하며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원가에 근거한 착신 접속요금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확실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MMC의 최종 판단은 분석의 초점은 외부효과 측정 여부나 측정 방법이 아니며 외부효과가 마케팅 및 SP 인센티브의 착신서비스에 배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MMC는 이동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 더욱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외부성으로 인한 상당한 이익이 착신서비스 이용자에게도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케팅 및 SP 인센티브 비용으로 0.5ppm을 LM 착신호에 부가하도록 허용하였다. 마케팅 비용 및 SP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 관계자별 견해는 <표 4>에 보다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표 4> 마케팅 비용 및 SP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 관계자별 견해

구 분	견 해
D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 인센티브는 착신호의 증분 비용 구성요소가 아니며, 가입자 수에 관련 • 따라서 가입비 및 통화료 수익과 대비하여 결정되어야 함 • 마케팅비용은 추가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타사업자망 가입자로부터 회수되어서는 안되며, 이동망 자신의 가입자로부터 회수되어야 함
Cell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비용 및 SP 인센티브는 모든 통화에 배분함이 보다 적합 • 가입자 증가→통화분수 증대→요금인하의 관계로 착신호 발신자가 수혜
Vodaf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비용 및 SP 인센티브는 착· 발신호의 직접비가 아니며, 수익 획득을 위해 발생 • 따라서 prime margin(총수익-회피가능비용) 기준으로 모든 통화에 배분 • 이들 비용 회수는 경제적 효율성(ramsey pricing)과 일치해야 하며 또 외부성도 고려해야 함

<자료>: MMC(December 1998), p.212에서 작성

바. 기타

MMC 보고서에는 앞에서 살펴 본 내용 외에도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지면 관계로 본 고에서 취급하지 못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착신 접속요금과 관련하여 본 고에서 언급한 착신 접속요금 설정방식 및 인하 문제 외에도 무 응답호(unanswered calls) 및 착신 전환호(diverted calls)에 대한 요금 부과와 공공이익 침해 여부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비용배분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본 고에서 취급한 액세스 비용, 마케팅 비용 및 SP에 대한 인센티브 배분 비용 외에도 착발신호에 대한 비용배분, 위치정보갱신 비용배분, 고객관리 비용, 음성메일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비용, 중계망(transit layer) 비용 배분 문제 등이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타 자본비용 문제, 외부성 문제, 면허수정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언급되고 있다.

III. OFTEL의 새로운 요금 규제 안의 개요와 이동전화 각 사의 반응

1. 규제 적용의 근거

현행 요금규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인 2002년 3월을 앞두고, OFTEL은 이동전화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사하여, 2001년 9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동전화로의 통화에 관한 요금규제 검토(Review of the charge control on calls to mobile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OFTEL은 「이동전화로의 통화」의 시장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 통화료를 지불하는 것이 발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신자에게는 착신측의 망과 요금을 선택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동전화회사에는 착신료를 인하하는 인센티브가 작용하지 않는다.
- 경쟁 원리가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동전화로의 착신 통화」는 하나의 독립된 시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이 시장에서는 모든 이동전화회사가 각각 시장지배력을 갖는다.
-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규제 개입

이 필요하다.

2. OFTEL의 제안 내용

OFTEL이 제안하는 2002년 4월 이후의 요금규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이번에 OFTEL의 제안에 대하여 이동전화 회사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OFTEL이 2001년 9월에 제안한 가격상한규제 방식이라 불리는 요금 규제 방식이다.⁴⁾

2006년 3월까지 향후 4년간, 이동전화회사가 설정하는 착신요금에 매년 「RPI-12(%)」의 가격상한 규제를 적용한다. 현행 「RPI-9(%)」보다 엄격한 가격인하율로, 앞으로 이 이외에 추가적인 가격인하 조치는 없을 전망이다(<표 5> 참조).

- 요금 규제 대상을 Vodafone, BT Cellnet(현 mmO2)의 2개 회사에서 Vodafone, BT Cellnet, Orange, One2One의 4개 회사로 확대 적용한다.
- 단, 현 단계에서는 제3세대 이동전화(3G)에 의한 통화는 요금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표 5> OFTEL이 제안하는 향후 요금규제

적용 기간	착신료 규제
2002년 4월~ 2006년 3월	Vodafone, BT Cellnet, Orange, One2One에 대하여 「RPI-12(%)」의 가격상한 규제 적용

OFTEL의 추계에 따르면, 현행 「RPI-9(%)」의 가격상한 규제를 「RPI-12(%)」의 가격상한 규제로 2002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향후 4년간 약 8억 파운드(약 1조

4,988억 원)의 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가격인하에 의한 통화량 증가를 고려하면 OFTEL은 이동전화회사의 수익 감소액이 약 6억 파운드(약 1조 1,24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⁵⁾[4],[5].

3. 이동전화 각 사의 반응과 동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FTEL은 새로운 요금 규제 적용의 대상이 되는 4개 회사에 대하여 면허 개정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에 대하여 이동전화 각사는 OFTEL이 제시한 면허개정을 모두 거부하였다.

OFTEL은 2001년 12월, 이 문제에 대하여 경쟁 위원회(CC)에 심사를 맡기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이동전화 착신료 문제는 결국 분쟁처리 기관인 CC의 중재로 넘어갔다. Vodafone과 BT Cellnet에 부과되고 있는 현행의 가격상한 규제는 과거 MMC(현재의 CC)가 도입을 권고했던 규제 제도이다. CC는 공공이익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 요금규제 적용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CC에 의한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6개월 내지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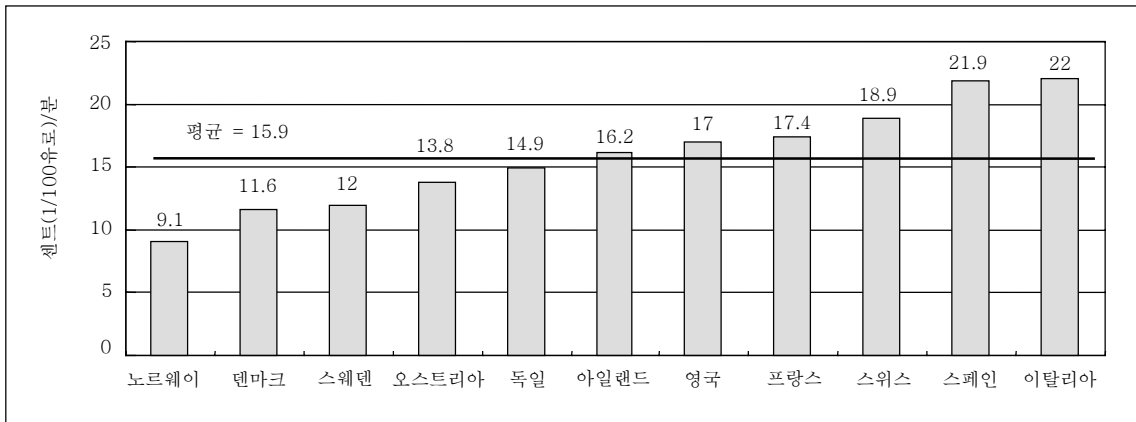
한편 OFTEL은 임시적인 조치로 현행 「RPI-9(%)」의 가격상한 규제방식을 2003년 3월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하였다. 영국의 착신료는(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 평균치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6].

IV. 주요 외국의 LM 착신요금 규제 동향

LM 착신 접속요금 문제는 영국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 또한 가맹국의 LM 착신 접속요금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4) 공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금 규제 방식으로 사업자는 가격상한규제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경영노력에 의해 비용을 삭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수익이 오르게 되므로 사업자에게는 합리적인 인센티브가 작용하게 된다. 가격상한규제의 값은 통상 「소매물가지수(Retail Price Index: RPI) - 생산성향상지수(X%)」로 표현된다.

5) 1파운드 = 1,873.52원(2002년 3월 8일 환율 매매기준)으로 계산. Telecom Market 및 www.hanvitbank.co.kr. 참조



<자료>: KDD 總研 R&A(2002. 1., pp. 27 - 30)

(그림 2) 유럽 주요국의 대표적인 이동전화 회사의 착신료 비교(2001년 6월 현재)

프랑스의 통신규제 기관인 ART는 2001년 11월, 이동통신 분야에서 지배적 사업자(SMP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Orange와 SFR의 2개 회사에 대하여 약 40%의 착신료 인하를 지시하였다. 인하는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인하율은 2002년도에 15%, 2003년도에 15%, 2004년도에 12.5%로 결정되어 있다. 각 연도의 실질적인 상한치는 각각 분당 1.32프랑(약 232원), 1.12프랑(약 197원), 0.98프랑(약 172원)이 된다⁶⁾[7],[8].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2001년 5월 말에 규제기관 PTS가 SMP 사업자인 Telia의 착신요금을 분당 평균 1.18크로나(약 151원)에서 0.98크로나(약 125원)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⁷⁾

한편 C&W, Colt, Global Crossing, WorldCom과 같은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고정망 통신사업자들은 LM 착신접속료의 즉각적인 인하를 각국의 규제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세계 통신산업 부문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서도 총무성이 LM 통화요금이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1년 초부터 LM 통화요금을 인하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그 결과, 통신업계 2위인 KDDI 그룹이 2002년 3월을 기점으로 하여 평일 주간 3분 기준으로 170~180엔에서 120엔 정도로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이어서 J-Phone도 가격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성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 지도를 통하여 2~3년 내에 MM 요금과 LM 요금의 격차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9].

V. 맺음말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1월, 정보통신부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과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LM 통화요금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인하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LM 접속료에 관한 원가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KT의 유보액을 얼마나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동망 착신접속서비스는 독점 서비스로 규제 당국이 규제하지 않으면 이동망 사업자가 부당하게 접속료를 징수할 유인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원가 이상으로 설정된 LM 착신접속료 때문에 지금까지 시내전화 가입자들은 LM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동망에서 부담

6) 1프랑=175.57원(2002년 3월 8일, 매매기준)으로 계산. Telecom Market 및 www.xe.com. 참조

7) 2002년 3월 8일, 매매기준(1크로나=127.72원)으로 계산. www.hanvitbank.co.kr 참조

해야 할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담해 왔다. 우리나라의 통신정책, 특히 상호접속 문제와 같은 통신 사업자간의 관계에 관한 규제정책은 사용자인 국민의 입장보다는 통신사업자 당사자간의 문제로만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특정 사업자가 아닌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LM 착신접속료 산정방식은 2년마다 망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가 정한 일정한 연간 인하율을 적용하여 접속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동전화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 및 그에 따른 통화량 확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원가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사업자간 분쟁을 방지하고 부당한 이득이나 손실을 방지하는 가장 공정한 정산방안이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동망에서도 고정망에서와 같이 LRIC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이동망 사업자의 비용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정망과는 달리 이동망 원가동인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므로 최소한 2~3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친 후, LRIC 방식을 이동망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방룡 외, 「MMC 보고서에 대한 분석보고서(기술경제 연구시리즈 99-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9.
- [2] 전자신문, 2002. 1. 19., 3면.
- [3] OFTEL, 「Reports on Reference Under Section 13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1984 on the Charges Made by Cellnet and Vodafone for Terminating Calls from Fixed-line Networks」, 1998. 12.
- [4] Carolyn Davies, "Mobile Termination Rates Still Lack Transparency," Telecom Markets, Baskerville, 2001. 10. 9., pp. 3 - 4.
- [5] www.hanvitbank.co.kr.
- [6] 原 剛, OFTEL提案の着信料規制に携帯電話各社が反撥, 競争委員会(CC)による審査へ, KDD 総研 R&A, 2002. 1., pp. 27 - 30.
- [7] Tatum Anderson, "Fixed Operators to Launch Assault on Mobile Termination Charges," Telecom Markets, Baskerville, 2001. 12. 4., pp. 1 - 2.
- [8] www.xe.com.
- [9] 本間 雅雄, 固定發携帶着の料金問題を考える, Info-Com アイ, 2002. 2.